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712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하동규, 양선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 접수 제74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가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할부금채무에 관하여 1994. 6. 23.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6. 11. 29.자로 보증보험금 1,859,842원을 대위변제한 것에 관하여, 원고는 C를 상대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4053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7. 판결을 선고받았고, ②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6488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29.자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4. 18. 확정되었다.
- C는 2019년경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1906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 한편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1965. 8. 28. 혼인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하면서 살다가, 1996. 1. 1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96. 2. 2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그러던 중 2017. 10. 8.경 망인이 사망한 이래 현재까지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 망인과 피고의 자녀로는 C와 G가 있는데,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피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2017. 10.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11.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차량할부 보증보험금의 구상금 1,859,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채권자인데, 망인 사망 후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지분 2/7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를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우선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0.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11.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2/7 지분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피고와 망인 부부는 약 3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하여 1996. 1. 17.경 부부 공동의 주거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한 사실, ② 이에 피고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1996. 2. 28.자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2017. 10. 8.경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20여 년간 더 그 곳에서 함께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던 사실, ③ 망인 사망 당시 77세였던 피고는 그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서 81세인 현재까지도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 ④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순전히 망인의 재산이라고 하기 어렵고 망인과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이거나 적어도 1/2 지분에 관하여는 부부간 명의신탁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망인 사후에 홀로 남은 늙은 처인 피고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후 죽을 때까지 생존과 생계의 기반이 될 재산인 점, ⑤ 한편 C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금전 등을 증여받은 사실,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와 C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그 실질에 맞게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그에 비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약 20여 년 전에 발생한 원금 1,859,842원의 차량할부 보증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인 점, ⑧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원고의 C에 대한 약 20년 전 발생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나아가 피고가 설령 위 채권의 존재 사실은 몰랐더라도,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았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해서는 안 되었을(했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므로) 것으로서 법이 규율해야 한다고 한다면, 망인 사망 당시 팔순을 바라보는 늙은 미망인이었던 피고로서는, 혹시 자식(C)에게 있을지도 모를 채권자들의 모든 채무를 갚아주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만에 하나 사해행위가 될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아파트의 지분에 자식의 채권자가 공동지분권자로 들어와 평온한 거주나

생계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 하에서, 자식의 채무를 일일이 찾아서 갚아 주도록 강제 받게 되는 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⑩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내지 공동상속인의 재산에까지 마치 물권자처럼 절대적 효력을 미쳐 추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실상 채무를 갚아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님에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약 20여 년간 회수되지 못하다가 막상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황에서 마침 그의 홀로 남은 노모가 형식상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주거지로 쓰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에 채권자취소권의 이름으로 추급 유사의 효과를 미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그 노모인 피고가 자신의 주거와 생존의 평안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그 채무를 대신 갚아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는 파장을 낳게 만드는, 이와 같은 소송에까지 기계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함은, 법원이 법과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과장된 효력을 승인하여 부정적 파장을 야기할 뿐, 제도의 본지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1)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과연 C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고, (2) 나아가 피고와 C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망인으로부터 피고로의 소유권이전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파씨조 스라브지붕 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파씨조

면 적 : 제1층 호 58.543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94170.7㎡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94170.7분의 32.4072

- 이 상 -

